청렴韓세상

2023회계연도

예산 사업설명자료(세입)

2023. 1.

식품의약품안전처

목 차

Ⅰ. 일반회계 ····· 3

(1) 기타관유물 대여료(11-51-513) ····· 5
(2) 기타 재산이자수입(11-54-546) ····· 6
(3) 과태료(12-56-563) ····· 7
(4) 과징금(12-56-565) ····· 15
(5) 위약금(12-57-572) ····· 18
(6) 가산금(12-58-581) ····· 19
(7)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 20
(8) 면허료 및 수수료(13-65-651) ····· 21
(9) 기타 잡수입(13-69-691) ····· 23
(10) 면허료 및 수수료(수대체)(14-65-651) ····· 24
(11) 기타 잡수입(수대체)(14-69-691) ····· 26
(12) 기타 고정자산 매각대(15-71-713) ····· 28

Ⅱ.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9

(1) 기타고정 자산매각대(11-71-713) ····· 31

Ⅰ. 일반회계

(1) 기타관유물 대여료

51-51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	(B-A)/A
기타관유물 대여료	63	79	79	81	81	2	2.5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시행령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②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6.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주거용인 경우 : 1천분의 20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나. 세입 개요

○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사)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14.12.19. 사용자부터 시행)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77	73	63	85

(2) 기타 재산이자수입

54-54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	(B-A)/A
기타 재산이자수입	339	367	367	374	374	7	1.9

※ 21년 : 기타 재산수입(54-545) 결산액

가.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86조(한국은행 등의 국고금 출납)**

① 한국은행 등이 받은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및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예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식약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훈령 제266호) 제22조(용역연구개발비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연구개발비 카드사용에 대한 캐쉬백 및 학술용역 선금예치 이자, 국고보조금 예치로 인한 금융이자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283	367	339	192

(3) 과태료

56-56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	(B-A)/A
과태료	371	370	370	377	377	7	1.9

가.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1의3.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6. 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징수한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자

6.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 · 광고에 사용한 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 · 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한 자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 가공 · 수입 · 조리 · 저장 · 운반 및 진열한 자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자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 · 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 · 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 · 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자
8.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자 및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ㅇ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자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6.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7.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8.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9.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10.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0의2.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11.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위생용품 관리법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 **약사법 제97조의2(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9조의3에 따른 합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징수한다.

○ **약사법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약사 ·한약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의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 69조의 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22조 또는 제40조제1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7조의2(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37조의4(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의4. 제34조제1항 단서 또는 제34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34조의4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임상시험등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질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40조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 제조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4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업·휴업·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4.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의2. 제47조의3제2항(제44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 공급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56조제2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한 자
7의4. 제68조의8을 위반하여 유해사례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의5. 제68조의10을 위반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의6. 제86조의6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참고인은 제외한다)
7의7. 제86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참고인은 제외한다)
7의8. 제86조의6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80조를 위반하여 면허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0.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87조의2를 위반하여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화장품법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또는 화장품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5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6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징수한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 제35조제2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직을 채취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조직은행의 장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조직은행의 장

2의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작성 및 비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2.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
4.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 · 징수한다.

○ **의료기기법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1의2. 제13조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5조제6항 ·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폐업 · 휴업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49조를 위반하여 허가증, 인증서 또는 신고수리서의 갱신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 · 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에 따른 '의무교육 미이수, 신고·보고의무 미이행자, 명령불이행, 허위신고 등 법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348	345	371	562

(4) 과징금

56-56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	(B-A)/A
과징금	6,333	2,351	2,351	3,923	3,923	1,572	66.9

가.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식품위생법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8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하생략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3조 또는 제2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하생략

○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하생략

-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하생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8조의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하생략

- **위생용품 관리법 제2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 **약사법 제81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국개설자가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이하생략

- 화장품법 제28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4조에 따라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과징금처분)** ①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이하생략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8조(과징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의 운영자가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의료기기법 제38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과징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 · 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 · 검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시험 · 검사기관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하생략

나. 세입 개요

○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에 따라 영업·제조 정지처분을 갈음하거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3,086	2,351	6,333	2,567

(5) 위약금

57-57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	(B-A)/A
위약금	37	116	116	118	118	2	1.7

가. 법적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9조(입찰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2조(계약보증금)**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6조(지체상금)**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각종 계약의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72	97	37	88

(6) 가산금

58-58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	(B-A)/A
가산금	5	6	6	6	6	-	-

가. 법적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5	4	5	1

(7)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1,894	2,445	2,445	2,673	2,673	228	9.3

가.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 한다.

나. 세입 개요

○ 급여 등 과오지급금에 대한 환수, 국고보조금 및 용역연구비 집행잔액, 임차보증금 반납 등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1,991	1,704	1,894	3,045

(8)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	(B-A)/A
면허료 및 수수료	3,342	3,168	3,168	3,231	3,231	63	2.0

가.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92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3. 제1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는 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2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 등의 신청, 신고 등을 하거나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2.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7조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

4의2.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6.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 심의 신청
7.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 검사
9.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7조제8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자

1의2.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인증 또는 제9조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제8항에 따라 기술·정보를 제공받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자
3. 제9조의2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6.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는 자
7.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8.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는 자
1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
13. 제22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자
1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15. 제26조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를 하는 자
15의2.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는 자
16. 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

나. 세입 개요

○ 식품 등 수입검사 수수료 및 영업허가 등 인허가 수수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3,255	2,754	3,342	3,796

(9) 기타 잡수입

69-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	(B-A)/A
기타 잡수입	19	36	36	37	37	1	2.8

가. 법적 근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수수료)** [별표 9] 제2호 나목 단서

2.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변경 신청

가. 지정신청

나. 시험검사의 품목 또는 항목에 대한 변경승인신청

※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산정한 국외여비 등 출장비를 추가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21	36	19	25

(10)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65-65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	(B-A)/A
면허료 및 수수료	25,099	39,879	39,879	26,551	26,551	△13,328	△33.4

가.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국고금 관리법 제8조(수입대체경비)**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에 있어서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 **약사법 제82조(수수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허가·갱신·등록·신고·승인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허가·갱신·등록·신고·승인·지정, 사전 검토 신청을 하려는 자
2. 신제품의 기준을 정하려는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

○ **의료기기법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라 기술문서, 안전성 · 유효성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를 받으려는 자
4. 제11조에 따라 사전 검토를 받으려는 자
5.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

2.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는 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 등의 신청, 신고 등을 하거나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5.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규격 및 원료 등의 인정을 위한 검사

나. 세입 개요

○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허가 및 심사에 따른 수수료 수입

○ 수입식품 잔류농약허용기준 설정, 건강기능식품 인정 심사, 유전자 변형식품 안전성 심사에 따른 수수료 수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19,075	23,726	25,099	23,838

(11) 기타 잡수입(수입대체경비)

69-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예산(B)	(B-A)	(B-A)/A
기타 잡수입	-	1,033	1,033	1,033	1,033	-	-

가. 법적 근거

○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조판매 · 수입품목의 허가신청)** ①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외국에서 현지실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를 내야 한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조판매·수입품목의 허가 신청)**①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약품 등 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 동등성의 입증이 필요한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및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의약외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외국에서 현지실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를 내야 한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할 것. 이 경우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한 의료기기로서 같은 목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은 의료기기는 같은 목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은 후 제조한 것으로 본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수입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하여 별표 4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할 것. 이 경우 별표 4 제3호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의료기기로서 같은 호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은 의료기기는 같은 호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은 후 수입한 것으로 본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2]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바. 적합성인정

마. 이 기준에 따라 적합함을 인정받거나 또는 준수사항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의약품 등 품목별 사전 GMP평가, 원료 의약품 해외 현지실사, 의료기기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업체로부터 징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846	68	-	-

(12) 기타 고정자산 매각대

71-71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	(B-A)/A
기타 고정자산 매각대	424	285	285	285	285	-	-

가.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40조(처분물품의 회계처리)**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내용년수 1년 이상의 불용물품 매각대금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333	83	424	265

Ⅱ. 농어촌특별회계

(1) 기타고정 자산매각대

71-713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액	2022년 예산액		2023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예산(B)		(B-A)/A
기타고정자산 매각대	31	10	10	18	18	8	80.0

가.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40조(처분물품의 회계처리)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내용년수 1년 이상의 불용품 매각대금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납액	15	8	31	7